공고 제2026 - 496호

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 결과 공고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7조의2, 제12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4조, 제37조, 제53조, 제59조,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, 제52조,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(직업능력심사평가원)가 수행한 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6일

고용노동부 장관

Ⅰ. 심사평가 결과 안내

1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결과 안내

□ 대상 기관 및 과정

○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 계획 공고(2025.12.30.)」에 따른 평가대상 훈련기관* 및 과정심사 신청 훈련과정

* 평가대상 기관이 훈련기관평가를 미신청하거나 포기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인증유예(미흡) 등급 부여

□ 선정 결과

○ **(기관평가)** 평가대상 4,613개소 중 **3,715개소 선정, 898개소 인증유예**(이하 미흡)

○ **(과정심사) 과정심사 신청 28,899과정 중 23,456과정 선정**

※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」에서 선정된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(이하, 국기훈련) 및 계좌제훈련 과정에 대하여 11월 중 **'훈련과정 반납제'** 시행 예정(추후 별도 공고)

□ 결과확인 경로

○ 고용24 심사평가시스템(이하 심사평가시스템)을 통하여 훈련기관평가 및 과정심사 결과 개별 조회 가능

- 고용24 심사평가시스템 > 「공모년도 **2026**」 선택 > 심사평가 대상별 공모 회차(11차, 12차, 13차) 선택 > 조회

※ 현장평가 피드백보고서는 '인증유예' 훈련기관에 한하여 제공

회차	심사평가시스템 결과확인 경로		
11회차	「심사평가 일원화」	「일원화 최종결과」	「평가결과 조회」
12회차	「인증평가」	「평가 최종결과」	「평가결과 조회」
13회차	「과정심사」	「심사결과관리」	「심사결과 목록」

※ [별첨3] 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이드 참고

2 유효기간 안내

□ 훈련기관 평가등급

○ 현장평가에 참여하여 새로운 평가등급을 획득한 기관의 유효기간은 2027. 1. 1.부터 적용

- 훈련기관은 **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평가를 신청**하여 기본평가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에 참여해야 하며, **미신청 시 미흡 등급 부여**

평가등급		유효기간*
일반3년(3년 인증)		2027. 1. 1. ~ 2029. 12. 31.
신규1년(1년 인증)	➡	2027. 1. 1. ~ 2027. 12. 31.
미흡(인증유예)		2027. 1. 1. ~ 신규1년(1년 인증) 또는 일반3년(3년 인증) 등급 획득 시까지

* 현장평가 미적용 기간

○ 현장평가 비대상 기관은 **기본평가 및 훈련성과 모니터링 결과가 적합인 경우 기존 등급 유지, 부적합인 경우 미흡 등급 부여**

평가등급		유효기간
일반3년(3년 인증)	➡	해당 등급 유효기간 유지
미흡(인증유예)		2027. 1. 1. ~ 신규1년(1년 인증) 또는 일반3년(3년 인증) 등급을 새로 부여받는 날까지

□ 훈련과정(훈련개시 가능 기간)

○ 우수훈련기관: **우수훈련기관 지위 만료일**까지 유효기간 부여

※ 훈련과정의 훈련개시 가능 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각 과정별 훈련개시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, **국기훈련은 우수훈련기관 지위와 관계없이 2027.12.31.까지** 유효기간 부여

○ 그 외 훈련기관: **2027. 1. 1. 부터 2027. 12. 31.**까지 부여

※ 위탁·인정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위탁·인정제한 기간 만료일에 따라 훈련과정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부여

□ 우수훈련기관

○ **(선정)** 현장평가 참여 일반3년(3년 인증)기관 중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, 유효기간을 2년 우대하여 2027. 1. 1.부터 2031.12.31.까지 5년 부여

○ **(선정 취소)** 기 선정 우수훈련기관 중 취소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**기본평가 또는 훈련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3년(3년 인증) 또는 미흡 등급으로 조정**

Ⅱ. 이의신청 접수

□ 신청 대상

○ 『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』 대상 기관 중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

<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 이의신청 대상>

구분	신청대상
기본평가	• 준법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• 재정건전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• 그 외 기본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
역량평가	• 훈련성과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 • 현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

구분	신청대상
과정심사	• 기본요건 심사에서 '부적합' 판정된 훈련과정 중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과정 * 훈련기관 신청자격, 훈련과정 기본요건, 정부지원 필요성 • 과정적정성 심사에서 '부적합' 판정된 훈련과정 중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과정 * 훈련계획 적정성, 동일과정 판별 심사, 국기-프로젝트 운영계획 적정성 • 성과적정성, 산업·지역 인력수요 심사에서 '부적합' 판정된 훈련과정 중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과정 • 훈련비 심사 신청과정 중 '훈련비 조정'에 이의가 있는 과정 • 직종분류가 '변경'된 훈련과정* 중 변경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과정 * 심사평가일원화 → 일원화최종결과 → 평가결과조회 → [과정심사] → 직종분류 → '변경'에 체크된 과정

□ 신청 기간: 2026. 11. 6.(금) ~ 11. 13.(금) 18:00

□ 신청 방법

○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가능

- 자세한 방법은 [별첨3]의 '결과확인 및 이의신청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이드' 참고

회차	심사평가시스템 이의신청 경로		
11회차	「심사평가 일원화」	「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	「기본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
			「역량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
			「과정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」
12회차	「인증평가」	「기본평가 결과」	「기본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
		「역량평가 결과」	「역량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」
13회차	「과정심사」	「이의신청」	「이의신청목록」

※ 과정심사 결과 변경된 직종에 대한 이의신청은 [별첨6]을 작성하여 전자우편(simsa@koreatech.ac.kr)으로 제출

□ (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고) 2026. 12. 18.(금) (예정)

※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고일은 이의신청 심사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 참고사항 >

- 이의신청한 과정은 이의신청 심의 결과 공고일까지 훈련과정을 실시전환할 수 없음
- 심사평가 신청 시 기(旣) 제출한 자료 및 전산 입력사항은 변경(수정·보완)할 수 없음
- 입력오류 등 훈련기관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된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

Ⅲ. 유의사항

1 공통사항

□ 결과 이의신청

○ **(이의신청 심의)**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'인정' 또는 '불인정' 결정

- 이의신청은 중복 신청(기본평가, 역량평가, 과정심사)이 가능하나,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미기입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가능

※ 예를들어 훈련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HRD-Net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취업인원 등 실적을 사전 확인한 후 **이의가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실적 수치**(누락된 취업자, 훈련생 유형 등)**를 반드시 기재**

-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'불인정'으로 확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통보한 결과를 최종 결과로 확정

○ **(이의신청 제외)** 2026년도 심사평가 결과 외 사항*은 이의신청 제외

* 평가포기 기관의 이의신청, 심사평가 문항별 점수 공개 요청, 심사평가위원 정보 공개 요청, 훈련성과 점수 산정 관련 세부 정보, 단순 건의사항 등

○ **(행정 사항)** 훈련기관은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」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등 제기 가능

□ 결과 조정 및 선정 취소

○ 다음의 경우 「2026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(집체) 심사평가」 결과 통지 이후에도 훈련기관평가 미흡 등급으로 조정, 훈련과정인정 취소 가능

① 거짓·조작된 자료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평가 등급을 획득하거나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경우
- 기본평가, 현장평가, 과정심사의 평가자료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나 출결 또는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위촉된 심사평가위원에게 컨설팅, 자문 등을 받고 심사평가 시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

- 혼합훈련 과정심사 시 훈련기관에 소유권이 없는 콘텐츠를 자체콘텐츠로 인정받은 경우 등
② 훈련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거나,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
③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
④ 전과정 위탁·인정 제한 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 발생 등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**즉시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 가능**

※ 2026.12.31.까지 우수훈련기관 선정취소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기 부여한 우대혜택 및 훈련과정 유효기간 등 조정

○ 행정소송·심판이 종결되는 경우, 해당 판결·재결 결과를 기관평가 결과에 즉시 반영할 수 있음

※ 전과정 위탁·인정제한 처분에 따른 미흡 또는 해당직종 위탁·인정제한 처분 등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취소가 집행정지 등으로 보류된 경우 해당 소송·심판 종결 시 즉시 반영

2 훈련기관평가 유의사항

○ **(평가등급 표기)** 「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56호, 2026.8.1. 시행)에 따라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

계획 공고('25.12.30.)	결과 공고('26.11.6.)
훈련기관 인증평가	훈련기관 평가
인증등급	평가등급
3년인증/1년인증/인증유예	일반3년(3년 인증)/신규1년(1년 인증)/미흡

※ 심사평가시스템 또는 KSQA홈페이지 메뉴명은 기존 명칭(인증평가 등)으로 표시될 수 있음

○ **(기본평가)** 이의신청 시 감점 치유를 위한 필요 서류*만 제출

*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, 기업신용등급 보고서 또는 확인서(기업신용평가기관 정보와 기업신용 평가등급, 유효기간 여부를 반드시 확인, 공공기관 제출용)를 한 개 파일이라도 **반드시 zip파일로 압축**하여 첨부

○ **(현장평가)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'인정'된 기관에 한하여** 본평가와 동일한 평가방법 및 기준으로 11.30.(월)~12.4.(금)(예정) 중 현장 재평가* 실시

* 현장 재평가 실시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**본 평가 시 적용하는 14일 이전 일정 안내 미적용**

- 본평가 당시 제시한 증빙자료 이외의 추가 증빙자료는 제출할 수 없으며, 본평가 증빙자료와 대조하여 추후 보완된 사항은 불인정

- 현장 재평가 대상 및 일정* 등은 해당 기관 개별 안내

* 평가 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시스템 참여신청서의 '평가담당자정보' 연락처 등을 최신화해야 하며, 연락처 오류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함

○ **(11회차)** 심사평가시스템 > **심사평가 일원화** > 평가신청 > 평가신청조회 > '평가명' > (평가참여신청서) '담당자정보변경' > '담당자변경' 클릭 후 담당자 정보 수정하여 '저장'
○ **(12회차)** 심사평가시스템 > **인증평가** > 평가신청 > 평가신청조회 > '참여승인' > (평가참여신청서) '담당자정보변경' > '담당자변경' 클릭 후 담당자 정보 수정하여 '저장'

3 과정심사 관련

과정심사 공통사항

○ **(기본방침)** 이의신청이 접수된 훈련과정의 경우 부적합 또는 조정된 사항에 대해 재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

- 기존 신청내역 및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판정 결과의 적합성을 재검증하되, 정부지원 필요성 부적합 과정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 타당성 또는 직업훈련의 실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적합 판정

○ **(성과정보 제공)** 훈련기관이 성과심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 강·약점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품질관리에 활용토록 **'우리기관 성과정보 (TPS, Training Performance Service)' 서비스 제공**

접속경로	https://www.ksqa.or.kr/tps/login.do

※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「최종평가결과 조회」에서 공모년도/회차(2026년 11회차 또는 13회차)를 선택하고, '사전심사' 또는 '성과적정성' 또는 '인력수요적정성' 심사 결과 내 훈련기관별 암호 확인 후 '우리기관 성과정보'에 접속, 훈련기관의 성과정보 확인 가능 ([별첨5] 참고)

○ **(우수훈련기관 시설·장비 확보)** 우수훈련기관은 훈련정원 기준이 아닌 훈련내용에 부합한 시설·장비를 보유한 경우 적합 판정

- 단, 실제 훈련과정 운영 시 회차별 실시인원에 따라 NCS 훈련기준 등을 준용한 시설·장비 갖추어 훈련 실시

※ 훈련기관 지도·감독 시 훈련 실시인원에 따른 시설·장비 활용 여부 점검

○ **(현장실습 편성 과정 현장실사)** 현장실습이 편성된 훈련과정은 관할 관서의 현장실사 후 시설·장비 적정성 확인되면 최종 적합 판정*

* 해당 과정은 '시설' 항목에 '조건부 적합' 판정하였으며, 조건부 심사 신청 시 기존 등록한 현장실습 시설과 현장실습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재등록하여야 함([별첨4] 조건부심사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이드 참고)

○ **(실시가능직종 심사)** '26년도 심사평가 신청 이후 실시가능직종이 제외된 경우 등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이 훈련기관의 실시가능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'시설' 항목 조건부 적합 판정*

* 조건부 심사 신청 방법은 (**[별첨4]** 조건부심사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이드 참고)

○ **(고성과 훈련과정 우대)** 실업자 훈련과정(국기훈련, 실업자계좌제) 중 고성과 훈련과정*으로 선정된 훈련과정은 훈련비 지원단가의 5% 우대* 지원

* 혼합훈련 과정 중 인터넷 원격 방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대한 비용(원격 정부 승인훈련비)은 우대 대상에서 제외, [별첨1] 에서 고성과 훈련과정 확인 가능

대상과정	· **(국기훈련)** 국기직종별 산업지역·인력수요 심사 결과가 적합이면서, 1그룹 심사 대상인 과정 중 국기직종별 상위 10%에 해당하는 성과점수를 보유하고, 2개년 평균 50명 이상 실시한 과정 · **(실업자계좌제)** NCS소분류별 성과적정성 심사 결과가 적합이면서, NCS소분류별 상위 10%에 해당하는 성과점수를 보유하고, 2개년 평균 150명 이상 실시한 과정
훈련비	· **(국기훈련, 실업자계좌제)** 훈련비 지원단가의 5% 상향 지원 (혼합훈련의 원격 정부 승인훈련비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)

※ 실업자계좌제 훈련의 경우 훈련생 자비부담금액의 증가 등의 사유로 지원단가 우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지원단가로 조정 가능([별첨1] 고성과 과정 목록 및 [별첨9] 고성과 훈련과정 훈련비 조정 신청서 참고)

○ **(훈련비 조정)** 타법령에 따라 훈련비 상·하한이 제한되는 훈련과정은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조정함

* [별첨7] 에서 훈련비 조정 과정 확인 가능

○ **(실시전환 안내)**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은 고용센터(국기 및 계좌제 훈련)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·지사(사업주 위탁훈련)에서 인정받은 후 심사평가시스템에서 실시 전환 가능

> ○ **(적합 과정)**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> 「과정심사」 > 「훈련과정 실시전환」 > 「실시전환」 > 「공모년도/회차 입력」 > 「검색」
>
> ○ **(조건부 적합 과정)**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> 「과정심사」 > 「훈련과정 실시전환」 > 「조건부신청 실시전환」 > 「공모년도/회차 입력」 > 「검색」

○ **(훈련개시 가능 기간 · 회차)** 훈련생 모집 또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훈련과정의 훈련개시 가능 기간 및 개설 가능 회차는 변동될 수 있음

국기훈련 관련 적용사항

○ **(국기훈련 선정인원)** '27년 정책 방향 및 정부 예산안 등을 고려하여, 사전 안내*한 지역·직종별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선정 인원을 조정함

*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-21호('26.4.13.) 「2027년 운영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지역직종별 배정 인원 안내」

> ○ **국기직종별 선정인원 확인 경로**
> - **(11회차)**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> 「심사평가일원화」 > 「일원화 최종결과」 > 「평가결과조회」 > 「인력수요적정성」 > '적합' 클릭
> - **(13회차)**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> 「과정심사」 > 「심사결과관리」 > 「심사결과목록」 > 「인력수요적정성」 > '적합' 클릭

○ **(국기-프로젝트 훈련과정 우대)** 국기-프로젝트 훈련으로 승인된 과정은 훈련비 지원단가의 10% 우대* 지원

※ '국기-프로젝트 우대'와 '고성과 훈련과정 우대'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, 훈련비 지원 단가의 15% 우대 지원

< 국기-프로젝트 훈련과정 훈련비 지원 단가 우대 >

구분	국기-프로젝트	국기-프로젝트 + 국기 고성과
뿌리직종 (38개)	130% (뿌리우대) + 10% (프로젝트) = **140% 최종**	130% (뿌리우대) + 10% (프로젝트) + 5% (고성과) = **145% 최종**
일반직종 (15개)	100% (일반) + 10% (프로젝트) = **110% 최종**	100% (일반) + 10% (프로젝트) + 5% (고성과) = **115% 최종**

○ **(과정평가형 자격 과정)**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국기훈련 과정*으로 신청한 국기훈련은 CQ-Net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과정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 결과 별도 확인 필요

* 훈련과정신청서 > 기본정보 > 신청훈련사업 > 과정평가형 해당 여부 '예' 선택한 과정평가형 연계 국기직종(11개) 훈련과정

- 지정된 교육·훈련과정은 2027년 1월 공고 예정인 「2027년도 시행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지정 공고」에서 정한 훈련개시 가능 기간 내에 훈련을 개시할 수 있음

Ⅳ. 훈련과정 조건부 심사 신청

◇ **'조건부 적합' 판정된 훈련과정은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조건부 심사를 반드시 신청**해야 하며, 조건부 심사 후 최종 '적합' 판정된 후 훈련 실시 가능

< 조건부 적합 항목별 상세 안내 >

항목	상세 설명
① 훈련내용	훈련과정명, 훈련대상자 등 추가·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
② 훈련시설	훈련시설의 추가·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
③ 훈련장비	훈련장비의 추가·보완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
④ 훈련교재	훈련교재의 추가·보완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
⑤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	교수학습 또는 평가방법의 추가·보완이 필요한 경우
⑥ 훈련 교·강사*	(훈련교·강사) 적정 교·강사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
	(보수교육) 교·강사 중 보수교육 이수 필요자가 있는 경우
⑦ 혼합훈련 조건부	인터넷원격훈련 활용 LMS, 콘텐츠 등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한 경우

* 과정심사를 통해 전문성이 확인된 교강사가 모두 퇴사하여 훈련운영이 불가한 경우 훈련기관평가센터에 문의(02-6943-4010)

○ **(심사 대상)** 2026년 심사평가 결과 중 위 표의 ①~⑦에 해당하는 항목이 '조건부 적합' 판정된 훈련 과정

- 훈련장비 중 '소프트웨어' 미구비 및 서류보완 등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된 경우, 조건부 심사 신청 시 증빙서류로 훈련과정 유효기간(2027.1.1. ~ 12.31.) 중 하루 이상을 포함한 라이센스 제출 필요

- 훈련시설 중 '직종변경'에 따른 '실시가능직종 미보유'로 조건부 적합 판정된 경우, ① 변경된 직종으로 실시가능직종 취득 후(설명회 자료집 1권 11쪽 참고) ② 조건부 심사 신청 시 '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 캡쳐본' 제출 필요

○ **(실시가능직종 캡쳐 경로)** HRD-Net > 「인증평가」 > 「실시가능직종」 > 「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」 > 전체 화면 캡쳐 (변경된 직종의 처리상태가 '승인' 상태여야 함)

○ **(신청 방법) 심사평가시스템을 통해 조건부 심사 신청**

- 조건부 항목 확인 및 세부적인 조건부 심사 신청 방법은 [별첨4]의 「조건부 심사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활용 가이드」를 참고

○ **(심사평가 일원화, 11회차)**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> 「일원화 조건부신청」 > 「조건부신청조회」 > 「공모년도 2026」 > 「일원화 심사평가 11회차」 > 「검색」 > 「조건부 신청」
○ **(과정심사, 13회차)** HRD-Net심사평가시스템 > 「과정심사」 > 「조건부신청」 > 「조건부신청목록」 > 「공모년도 2026」 > 「13회차」 > 「검색」 > 「조건부 신청」

○ **(신청 기간) 2026. 11. 16.(월) ~ 12. 31.(목) 18:00**

※ 신청 기간 내 상시로 조건부 심사를 신청, 조건부 항목을 보완한 경우에 한해 훈련실시 가능

○ **(현장 실사)** 조건부 사유 해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
○ **(결과 통보)**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
- 조건부 사유를 해소하여 최종 적합 판정된 훈련과정은 관할 고용센터의 인정처리 이후 훈련과정 실시전환 가능

Ⅴ. 기타

○ **(훈련과정명 변경)** 동일과정 중 승인된 훈련과정의 과정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문서24(https://docu.gdoc.go.kr)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 가능([별첨8]에서 변경 가능 대상 및 방법 참조)

※ 조건부 심사 기간(2026. 11. 16.(월) ~ 12. 31.(목)) 내 과정명 변경 신청가능하며, 실시전환 전에 신청 필수(실시 전환 후 과정명 변경 불가능)

○ **(AI 활용 안내)** 심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분석 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으며, AI 분석 결과에 대하여 심평원 담당자 및 심사위원의 추가 검토·확인을 거쳐 최종 심사결과를 확정함

Ⅵ. 문의처

구분	문의처 및 문의 방법		
심사평가	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평가센터	누리집	https://www.ksqa.or.kr/ → Q&A 바로가기 → 집체훈련 과정심사, 집체훈련 인증평가
훈련 교·강사 보수교육	능력개발교육원	누리집	https://hrdi.koreatech.ac.kr/ → 이용안내 → 문의하기
HRD-Net	한국고용정보원	누리집	https://www.work24.go.kr → 고객센터 → 질문과 답변
혼합훈련 및 국기-프로젝트 컨설팅	직업능력심사평가원 컨설팅TF팀	누리집	https://www.ksqa.or.kr/ → Q&A 바로가기 →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
공공콘텐츠 및 STEP 이용	온라인평생교육원	누리집	https://shub.step.or.kr/ → 고객지원센터 → 1:1문의